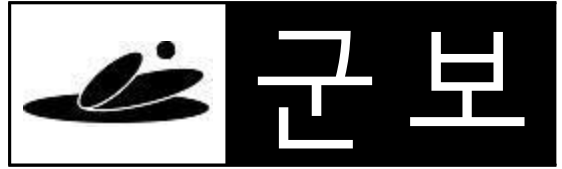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35호 2021. 10. 15.(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774: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776: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2
- 예산군 공고 제2021-1790: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회 람									
--------	--	--	--	--	--	--	--	--	--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4)

예산군 공고 제2021 - 1774 호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2.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2021.3.23. 일부개정, 2021.9.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명, 제2조, 제3조)

나.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4.(목)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교육체육과 청소년팀(☎ 041-339-7493, fax 041-339-74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금) ~ 2021. 11. 4.(목)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청소년팀(우편번호 32435)

붙임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운영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에 부의될”을 “위원회에 부의될”로, “운영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실행위원으로”를 “실무위원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실행위원회 위원장은”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실행위원은”을 “실무위원은”으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행위원회는”을 “실무위원회는”으로, “실행위원회의”를 “실무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예산군 <u>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u>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u>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u>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u>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위원회</u>(이하 “<u>운영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기능) <u>운영위원회</u>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제4조(구성) ① <u>운영위원회</u>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p>	<p><u>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 <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u>-----</p> <p>제2조(설치) ----- <u>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u>----- <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u>(이하 “<u>위원회</u>”-----</p> <p>제3조(기능) <u>위원회</u>-----</p> <p>제4조(구성) ① <u>위원회</u>-----</p>

한다.

② ~ ④ (생략)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
위원회-----
-----.
-----.

② 위원회-----

-----.

③ 위원회-----

-----.

제8조(회의록) 위원회-----

-----.

제9조(출석발언) ----- 위원회 -----

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4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 위원회에 -----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위원회에 부의될 -----
----- 위원회의 -----
----- 위원회에 실
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으로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
----- 실무위원은 -----
-----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

④ 실무위원회는 -----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⑤ ----- 실무위원회 -----
----- 실무위원장-----.

【붙임 1】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붙임 2】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사항으로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교육체육과장

예산군 공고 제2021-1776호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예산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5조)
-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11. 4.(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이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406, FAX : 041-339-7409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FAX (FAX 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다.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41)339-74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이용 지원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1】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예산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예산군 공고 제2021-1790호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1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청결 유지 조치 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위임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삭제된 조항 및 용어 등 조례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청결 유지의 책무(안 제3조)
- 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환경과 (참조 : 청소행정팀 ☎ 041-339-7522, fax : 041-339-7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우 32435)

붙임 :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제3조(청결 유지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
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
내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그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예산군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에 드는 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나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은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경우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하여 연속형 종량제 봉투 전용쓰레기통(군수가 지정한 규격 제품에 한정한다)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인 지원은 2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제3조의 청결유지의 책무 및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 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